

韓國의 公企業監査에 관한 研究

俞 焄*

一. 序 論

1. 研究의 目的
2. 研究의 範圍 및 方法
- 二. 韓國公企業의 現況
1. 公企業의 設立動機
2. 公企業의 部門別 分類
3. 公企業의 形態別 分類
4. 國家持株會社
5. 公企業에 對한 統制

三. 公企業監査의 構造

1. 公企業監査의 法的 根據

2. 公企業監査의 目的

3. 公企業監査 擔當機構

四. 公企業監査의 運營

1. 公企業監査의 方法
2. 公企業監査의 時期와 頻度
3. 代行監査·主務部에 의한 監査 및 自體監査
4. 結果의 處理
5. 公企業監査와 費用便益分析

五. 結 論

一. 序 論

1. 研究의 目的

第2次大戰後 英國과 프랑스가 大規模의 國有化를 斷行하여 英國 프랑스 등에 있어서 公企業의 重要性이 急增되었는데 비단 이들 西歐諸國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를 包含한 많은 發展途上國에 있어서 公企業의 重要性이 增大되어가고 있다.

이와 같이 公企業의 重要性이 增大됨에 따라 公企業에 對한 統制를 어떠한 形態로 어느 程度 加할 것이냐 하는 問題가 提起되는데 특히 公企業에 對한 監査는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 하나 하는 問題가 많은 사람들의 關心을 모으고 있다.

本研究은 우리나라에 있어서의 公企業에 對한 監査體系의 實態를 檢討하고 그 問題點을 살피 보는데 그 目的이 있다.

2. 研究의 範圍 및 方法

本研究은 크게 3個部分으로 나누어질 수 있다. 第2項에서는 우리나라 公企業의 實態를 概觀하고 第3項에서는 公企業에 對한 監査의 構造의 側面을 檢討했으며 第4項에서는 監

* 서울대학교 行政大學院 院長

查의 運營의 側面을 考察했다.

主務部處에 의한 監査와 公企業의 自體監査에도 言及하기는 했으나 本研究의 焦點은 公企業에 대해 監査院 監査에 있다는 것을 밝혀두고자 한다.

本研究는 文獻調査, 既存資料의 分析, 監査院 및 各部處 監査擔當官室 實務者들과의 面接등을 통해서 遂行되었다. 貴重한 時間을 割愛해준 商工部, 建設部 및 財務部の 監査擔當者들에게 〇 機會를 빌어 謝意를 表하고자 한다.

二. 韓國公企業의 現況

1. 公企業의 設立動機

韓國에서 公企業設立의 動機는 여러가지를 들 수 있을 줄이나 우리는 다음과 같은 몇가지를 들고자 한다.

- (1) 公益事業의 運營
- (2) 社會間接施設의 建設과 運營
- (3) 天然資源의 開發
- (4) 民間資本이 參與하기를 願치 않는 分野에 있어서의 基幹産業의 建設
- (5) 合作企業에 있어서의 多國籍企業의 영향력의 抑制
- (6) 農水産業의 振興
- (7) 私企業의 肥大의 防止
- (8) 政府歲入의 確保

2. 公企業의 部門別 分類

우리나라의 公企業을 部門別로 分類한다면 다음 表와 같은데 여기에는 間接投資機關은

〈表 1〉 公企業의 部門別分類

部 門 別	該 當 企 業
運 輸 事 業	鐵道廳
通 信 事 業	遞信部
에너지部門	大韓石炭公社・韓國電力株式會社
鐵鋼産業	浦項綜合製鐵株式會社
化學工業	韓國綜合化學工業株式會社
食品 및 煙草	農漁村開發公社・專賣廳
建設業	大韓住宅公社・韓國道路公社・大韓浚渫公社・産業基地開發公社・農業振興公社
金融・保險・證券	韓國産業銀行・中小企業銀行・韓國住宅銀行・國民銀行・韓國外換銀行・서울信託銀行・朝興銀行・第一銀行・韓國證券去來所
文化活動	韓國放送公社・國定教科書株式會社
서어비스및其他	大韓貿易振興公社・國際觀光公社・韓國造幣公社

包涵되지 있지 않다.

3. 公企業의 形態別 分類

公企業은 形態에 따라서 여러가지로 分類할 수 있는데 우리는 다음과 같이 세가지로 大別하고자 한다.

가. 政府部處의 形態를 지닌 公企業

우리나라의 實定法이 政府企業이라고 부르고 있는 政府部處의 形態를 지닌 公企業은 先進國이나 後進國을 막론하고 公企業이 취하는 가장 傳統的인 形態라고 할 수 있으며, 鐵道·通商·港灣·專賣事業 심지어는 製造業에도 이 組織形態가 사용되어 왔던 것이다. 우리나라의 鐵道廳·遞信部·專賣廳 등은 政府部處의 形態를 지닌 公企業의 代表的인 예라고 할 수 있다.

政府部處의 形態를 지닌 公企業은 순수한 形態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特徵을 지닌다.⁽¹⁾

① 每年 國會의 議決을 얻어 確定되는 豫算에 의하여 運營된다. 우리나라에서는 政府部處의 形態를 지닌 公企業을 위하여 特別會計를 마련하고 一般會計와는 별도로 처리하도록 하고 있으나 그 歲入歲出豫算에 관하여 每年 國會의 議決을 얻어야 한다.

② 政府部處의 形態를 지닌 公企業은 一般行政機關에 適用되는 豫算·會計 및 監査關係의 法의 適用을 받는다.

우리나라에서도 1962年末까지는 一般行政機關에 適用되었던 財政法이 그대로 交通部·遞信部·專賣廳에도 適用되었던 것이다. 그러나 1962年度부터는 企業豫算會計法이 政府部處의 形態를 지닌 公企業에 適用되게 되었으며 豫算會計法의 一部 規定의 適用을 排除하게 되었다. 그러나 一般行政機關에 適用되는 監査院法은 지금도 그대로 政府部處의 形態를 지닌 公企業에 適用되고 있다.

③ 政府部處의 形態를 지닌 公企業의 職員은 公務員이며 그들의 任用方法·勤務條件 등은 一般公務員의 그것과 동일하다. 굳이 差異點을 찾는다면 國家公務員法과 公務員服務規程에 의거하여 이들 鐵道廳·專賣廳·遞信部の 公務員 중 現業機關의 作業現場에서 근무하는 者는 團結權·團體交涉權 및 團體行動權을 지니고 있으며, 鐵道勞組·遞信勞組·專賣勞組를 각각 組織하고 있다는 點이다.

④ 이 形態의 公企業은 보통 中央官署 또는 그 傘下機關의 形態로 運營이 된다. 따라서 局·課를 新設하거나 廢止하려면 職制(大統領令)를 改正해야 하며 定員을 늘리려면 公務員 定員令(大統領令)을 改正해야 한다.

나. 株式會社

商법에 의하여 設立된 株式會社의 形態를 지니는 것으로서 政府가 그 株式의 全部 또는

(1) A.H. Hanson, *Public Enterprise and Economic Development* (London: Routledge and Kegan Paul, 1959), pp. 337-338.

一部를 所有하는 것이 있다.

韓國에서 株式會社의 形態를 지닌 公企業을 活用하는데에는 두가지 理由가 있다고 생각한다. 첫째로 政府가 資本과 技術을 提供하는 私企業과 제휴하여 새로운 企業體를 設立하기를 願하는 경우에 이 形態가 利用된다. 둘째로 歷史的 遺産을 들 수 있다. 解放前 日本人 所有였던 歸屬財産이 政府所有가 됨으로서 많은 大企業을 政府가 所有하기에 이르렀다. 1961년까지는 歸屬財産의 相當部分이 拂下되었으나 一部 大企業과 모든 銀行이 株式會社의 形態로 公企業으로 남게 되었다.⁽²⁾ 韓國電力株式會社, 大韓重石株式會社 및 市中銀行이 그 代表的인 例이다.

다. 公 社

韓國의 公社의 形態를 지닌 公企業은 大體로 다음과 같은 特徵을 지닌다.

① 特別한 目的을 위하여 特別法에 의하여 設置된다. 政府部處의 形態를 지닌 公企業은 政府組織法에 의하여 設立되며, 株式會社의 形態를 지닌 公企業은 商法에 의하여 設立됨을 原則으로 하는 데 대하여 公社들은 一般적으로 特別法에 의하여 設立된다.

예컨대 韓國產業銀行은 韓國產業銀行法에 의하여, 韓國造幣公社는 韓國造幣公社法에 의하여, 大韓石炭公社는 大韓石炭公社法에 의하여 각각 設立되었다.

② 公社는 法人으로서 當事者能力을 지닌다. 訴訟을 提起하고, 訴訟을 當할 수 있으며 契約의 當事者가 될 뿐만 아니라 公社의 名義로 財産을 所有할 수 있다.

③ 公社의 社長은 主務部長官의 提請으로 大統領이 任命하며 副社長 및 理事는 社長의 提請으로 主務部長官이 任命하도록 되어 있다. 監事는 財務部長官과 協議하여 主務部長官이 任命한다.⁽³⁾

④ 公社는 원칙적으로 一般行政機關에 適用되는 豫算·會計 및 監査關係의 法令의 適用을 받지 않는다. 우리나라의 公社들은 政府投資機關豫算會計法의 適用을 받는데 이것이 一般行政機關에 適用되는 豫算會計法과 다른은 더 말할 것도 없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公社들은 一般行政機關에 適用되는 監査關係의 法律인 監査院法의 適用을 받는다.

⑤ 대부분의 경우에 있어서 公社의 職員은 公務員이 아니며, 그 職員의 任用과 報酬에 관한 規定은 自體의으로 制定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公社의 職員도 公務員이 아니나 公社의 任員은 準公務員이다.

4. 持株會社

韓國에서도 이탈리아·스페인·터키등 諸國의 경우와 같이⁽⁴⁾ 國家持株會社가 重要한

(2) Lerov P. Jones, *Public Enterprise and Economic Development: The Korean Case* (Seoul: Korea Development Institute, 1975), pp. 131-132.

(3) 政府投資機關管理法, 第 6 條

(4) 이들 諸國의 國家持株會社에 관해서는 俞 烈, 公企業論[全訂版] (서울: 法文社, 1976), pp. 131-143, 151-155, 295-296 參照

役割을 담당한다. 傘下企業을 가지고 있는 公企業이 많이 있으나 重要性을 지니는 持株會社로서 다음의 3個 企業을 들 수 있다.

가. 韓國產業銀行

持株會社 중에서 가장 重要한 公企業은 韓國產業銀行이라 할 수 있다. 基本的으로 產業資金을 融資管理하는 金融機關이라고 할 수 있는 產業銀行은 副次的으로 企業의 所有·支配도 담당하고 있다. 한마디로 말해서 產業銀行은 企業의 新設보다는 不實企業에 대한 支援과 치유에 注力해왔다고 할 수 있다.⁽⁵⁾

나. 農漁村開發公社

産業銀行과는 달리 農漁村開發公社는 企業家的 機能을 遂行해 왔다. 第1期(1967~1971)에 있어서는 農漁村開發公社는 農水産物の 處理·加工에 從事할 子會社를 많이 設立했을 뿐만 아니라 一部 事業을 直營하기도 했다. 그러나 第2期(1971~)에 있어서는 民間企業과 競爭하여 直接 事業을 하기보다는 이 分野에 從事하는 民間企業에 대한 支援에 重點을 두게 되었다.⁽⁶⁾

다. 韓國綜合化學工業株式會社

綜合化學은 化學工業 分野에 대한 政府投資의 道具로 活用되어왔다고 할 수 있다. 産業銀行과는 달리 綜合化學은 既存企業의 吸收보다는 新設企業을 위한 投資에 注力했다. 綜合化學은 子會社의 規模가 巨大할뿐만 아니라 化學工業이라는 分野가 戰略的인 가담에 重要性을 지닌다고 하겠다.⁽⁷⁾

5 公企業에 대한 統制

가. 主務部長官에 의한 統制

다른 나라의 경우와 같이 韓國에서도 公企業은 第1次的으로 主務部長官의 統制를받도록 되어 있다. 傘下企業을 가장 많이 지니고 있는 部處는 財務部이며 다음이 商工部이다.

(1) 任員의 任命

主務部長官이 지니고 있는 統制權중 가장 重要한 것은 任員의 任命權이라고 할 수 있다. 모든 投資機關의 社長은 主務部長官의 提請으로 大統領이 任命하며, 副社長 및 理事는 社長의 提請으로 主務部長官이 任命하도록 되었다.

社長·副社長·理事의 任期는 3年이며 監事의 任期는 2年이다.

(2) 豫算上の 統制

政府投資機關의 長은 豫算을 編成하여 8月 31日까지 主務部長官에게 提出하여 그 審査를 거친 후 經濟企劃院長官에게 提出하는데 각 機關의 豫算은 豫算室의 査定을 받는다. 豫算室의 査定이 끝나면 國務會議의 審議를 거쳐 大統領의 承認을 얻음으로써 政府投資機關의

(5) 上揭書, pp. 262-264 參照

(6) 上揭書, pp. 265-266 參照

(7) 上揭書, pp. 264-265 參照

豫算은 확정되는 것이다.⁽⁸⁾

政府投資機關의 長이 豫算決定通知를 받았을 때에는 遲滯없이 4分期別 事業施行計劃書를 작성하여 역시 主務部長官·經濟企劃院長官·財務部長官에게 提出해야 하며, 每 4分期마다 前分期의 事業實績과 收支狀況을 명백히 한 調書를 작성하여 역시 主務部長官·經濟企劃院長官·財務部長官에게 提出한다.⁽⁹⁾

豫算의 轉用과 豫備費의 사용을 살펴본다면, 政府投資機關의 長은 豫算執行上 불가피하다고 認定할 경우에는 推定損益計算書의 各 項間의 金額을 轉用할 수 있으나 豫算總則으로 특별히 정한 費目은 主務部長官의 承認없이 轉用할 수 없으며 豫備費의 사용은 主務部長官의 承認을 얻어야 한다.⁽¹⁰⁾

(3) 業務上의 統制

個別的인 政府投資機關의 設置法의 規定이 다르기는 하나 1948年 以來 오늘날까지 主務部長官에게 業務上의 統制權을 부여하지 않은 設置法은 하나도 없다고 해도 過言이 아니다.

代表的인 規程의 하나로서 「建設部長官은 公社의 業務를 指導, 監督한다」는 大韓住宅公社法 第25條를 들 수 있겠다.

設置法에 따라서는 主務部長官에게 特殊事項에 관한 個別的 監督權을 부여하는 경우도 있다. 例를 들면 韓國電力株式會社法 第22條는 主務部長官에게 ① 電力需給에 관한 事項, 電源開發에 관한 事項, ② 供給條件에 관한 事項에 관하여 必要한 命命을 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것이다.

(4) 監 查

大部分의 政府投資機關設置法은 主務部長官에게 公企業의 業務·會計 및 財産에 關한 事項을 檢査할 수 있는 權限을 부여하고 있다.⁽¹¹⁾

(5) 年次報告書

公企業은 大體로 前年度의 事業實績에 關한 年次報告書를 主務部長官에게 提出하도록 되어 있으며⁽¹²⁾ 大部分의 設置法은 또한 主務部長官에게 公企業의 業務나 財産에 關하여 必要한 報告를 要求할 수 있는 權限을 부여하고 있다.⁽¹³⁾

나. 其他機關에 의한 統制

(1) 經濟企劃院

經濟企劃院은 一種의 超部處的인 機關으로서 經濟企劃院長官은 副總理를 兼하고 있다.

(8) 政府投資機關豫算會計法 第9條 및 第10條, 第1項, 第3項, 第4項, 第5項

(9) 政府投資機關豫算會計法 第13條

(10) 政府投資機關豫算會計法 第14條 및 第15條

(11) 例를 들면 韓國石油開發公社法 第31條, 韓國電力株式會社法 第25條, 第1項

(12) 政府投資機關管理法 第12條

(13) 例를 들면 韓國放送公社法 第27條, 第1項, 韓國土地開發公社法 第41條

經濟企劃院은 公企業의 統制에 關하여 크게 두가지 權限을 지니고 있다. 첫째는 公企業의 豫算에 대한 統制權이며 둘째는 公企業의 生産品에 대한 價格統制權이다.

(가) 豫算統制權

經濟企劃院長官은 政府投資機關豫算編成指針을 늦어도 6月 30日까지 政府投資機關의 長에게 示達하여야 한다. 豫算編成指針을 받은 政府投資機關의 長은 豫算을 編成하여 8月 31日까지 主務部長官에게 提出하며 그 審査를 거친 후 經濟企劃院長官에게 提出하는데 政府投資機關의 豫算은 豫算室의 査定을 받는다.

豫算室의 査定이 끝나면 國務會議의 審議를 거쳐 大統領의 承認을 얻으므로서 政府投資機關의 豫算은 確定되는 것이다.

政府投資機關의 豫算이 決定되면 經濟企劃院長官은 이를 政府投資機關에 通知한다. 豫算決定通知를 받았을 때 政府投資機關은 지체없이 4分期別 事業施行計劃書를 作成하여 主務部長官·經濟企劃院長官·財務部長官에게 提出해야 한다.

(나) 價格統制

「物價安定 및 公正去來에 關한 法律」에 의하여 政府는 物品의 價格이나 用役의 代價의 最高價格를 指定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實際에 있어서 大部分의 企業은 比較的 自律적으로 價格을 決定할 수 있다.

價格統制라는 觀點에서 볼 때 産業을 세가지로 나누어서 생각할 수 있다. 첫째는 政府의 嚴格한 價格統制를 받는 事業이며, 둘째는 完全한 自律性을 누리는 事業이고, 셋째는 統制된 自由를 지니는 事業이다.

大部分의 公企業은 첫째 類型 또는 셋째 類型에 속하므로 公企業들은 大體로 經濟企劃院의 價格統制를 받고 있다고 할 수 있다.

(2) 財務部

前述한 바와 같이 財務部는 다른 어느 部處보다 公企業을 많이 管掌하고 있으며 財務部長官은 主務部長官으로서 이들 公企業에 대해서 各種 統制를 가하고 있다.

이와 같은 主務部長官으로서의 統制權外에 財務部는 主로 出資管理課를 通하여 各種의 統制權을 行使하고 있는데 이를 要約하면 다음과 같다.

每年 財務部는 各政府投資機關으로부터 提出된 決算報告書에 의거하여 政府投資機關決算書를 작성한다.⁽¹⁴⁾

政府投資機關의 監事는 主務部長官이 財務部長官과 協議하여 任命하며 監事는 分期別 監查報告書를 財務部長官에게 提出해야 한다.

(3) 監查院

監查院의 가장 重要한 機能은 國家의 歲入歲出決算의 確認이라 할 수 있는데 이밖에도

(14) 政府投資機關豫算會社法 第16條 第1項 및 第3項

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가 資本金의 2分の 1 이상을 出資한 法人의 會計는 監査院의 必要의 檢査事項으로 되어 있으며, 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가 資本金의 一部를 出資한 자의 會計와 間接投資機關의 會計는 選擇的 檢査事項으로 되어 있다. 이 밖에 詳細한 것은 第3項과 第4項에서 다루기로 한다.

三. 公企業에 대한 監査院監査의 構造

1. 公企業監査의 法的 根據

公企業에 대한 監査院監査의 法的 根據는 監査院法, 政府投資機關豫算會計法 및 個別的인 公企業設置法에서 찾아볼 수 있다.

가. 監査院法

監査院法 第22條 第1項 3號에 의하여 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가 資本金의 2分の 1以上을 出資한 去人 即 政府投資機關과 地方公企業의 會計는 必要의 檢査事項으로 되어 있다.

그리고 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가 資本金의 一部를 出資한 者(持分率이 50%에 未達하는 者)와 再投資法人(間接投資機關)의 會計는 所謂 選擇的 檢査事項으로 되어 있다.

나. 政府投資機關豫算會計法

監査院法 第16條의 規定과 同一한 趣旨의 規定이 政府投資機關豫算會計法에도 있다. 同法 第16條 第3項은 財務部長官은 政府投資機關의 決算을 總括하여 다음 年度 6月 30日까지 監査院長에게 送付하여야 한다고 規定하고 있으며 同條 第4項은 監査院長은 政府投資機關의 決算書를 檢査하고 그 報告書를 다음 年度 8月 31日까지 財務部長官에게 送付하여야 한다고 規定하고 있다.

다시 말하자면 國家가 資本金의 2分 1 이상을 出資한 企業인 政府投資機關의 決算은 政府投資機關豫算會計法의 規定에 의해서도 監査院이 每年 監査하도록 되어 있으나 國家가 資本金의 一部를 出資한 企業(所謂 出資機關)이나 國家持株會社의 子會社인 間接投資機關의 監査에 관해서는 規定이 없다.

다. 個別的인 公企業設置法

監査院法과 政府投資機關豫算會計法에 規定이 있는 이상 個別的인 公企業設置法에 일일이 規定할 必要가 없으므로 最近에 制定된 設置法은 「豫算과 決算에 관하여는 政府投資機關豫算會計法의 規定을 適用한다.」⁽¹⁵⁾고 規定하는 것이 常例이나 오래된 設置法은 監査院監査에 관해서 規定을 두고 있는 경우가 있다. 韓國産業銀行法 第46條는 「韓國産業銀行의 收入支出의 決算은 會計年度마다 監査院에서 檢査한다」고 規定하고 있는데 同一한 趣旨의 規定은 中小企業銀行法 第45條와 大韓石炭公社法 第26條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15) 예를 들면 韓國土地開發公社法 第37條 第1項, 韓國石油開發公社法 第22條

2. 公企業監査의 目的

監査院의 公企業監査의 目的에 關係서는 監査院法이나 政府投資機關豫算會計法에 明文의 規定이 없으며 監査院의 政府投資機關 決算檢査報告에서도 言及이 없다.

監査院이 每年 펴내는 業務現況이나 業務計劃에서도 1978年度까지는 言及이 없다가 1979年度 業務計劃에서 처음으로 簡單히 言及했으며⁽¹⁶⁾ 1980年度 業務現況에서 比較的 具體的으로 이를 개진하고 있다.⁽¹⁷⁾ 이곳에서는 1980年度 業務現況에 나타난 바를 中心으로 監査院의 公企業監査의 目的을 살펴보기로 한다.

가. 設立目的副應度 向上

監査院은 公企業監査의 目的의 하나로서 公企業의 設置法등에 明示되어 있는 各公企業의 設立目的에 보다 副應하도록 한다는 것을 들고 있다. 이를 위해서 (1) 繼續的인 成果分析으로 設立目的의 寄與度를 確認하고, (2) 不必要하거나 成果없는 機關이나 事業을 是正·抑制하며, (3) 金融秩序를 確立한다는 것이다.

나. 經營의 合理化

公企業監査의 둘째 目的으로서 經營의 合理化를 들고 있는데 이를 위해서 (1) 公企業의 自體監査機構의 強化를 促求하고 (2) 不實 및 赤字要因을 排除하며, (3) 浪費抑制과 經費節減을 促求한다는 것이다. (4) 合理의 人力運營과 人事刷新을 이룩하며 (5) 不實機關을 重點的으로 是正한다는 것이다.

다. 經營陣의 責任經營制 確立

公企業에 대한 政府各機關의 統制가 多元化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過多하다는 批判이 提起되고 있는데 監査院은 公企業經營陣의 責任經營制의 確立을 公企業監査의 目標의 하나로 내세우고 있다. 이를 위해서 (1) 任員陣의 責任經營意識을 鼓吹하며, (2) 社長就任 1年乃至 1年半後에 綜合監査를 實施하고 (3) 責任과 權限의 併行을 保障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라. 國家發展과 公企業監査의 目的

監査院의 公企業監査의 目的으로서 經營의 合理化와 함께 設立目的副應度 向上과 經營陣의 責任經營制 確立을 내세우고 있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라 하겠다. 任員陣에게 責任經營意識을 鼓吹하겠다는 經營陣의 責任經營制는 政府各機關에 의한 統制가 多元化되어 있는 狀況下에서 매우 多幸한 일이라 하겠다.

더 重한 것은 設立目的副應度 向上을 公企業監査의 目的의 하나로 들고 있다는 事實이다. 많은 公企業이 그 設置法에서 國家發展에의 寄與를 그 設立目的으로 들고 있으므로⁽¹⁸⁾ 設立目的副應度 向上이란 窮局的으로 國家發展에의 寄與度 向上을 意味하는 것이라 할 수

(16) 監査院, 1979年度業務計劃 (서울: 監査院, 1979) p. 22.

(17) 監査院, 業務現況 (서울: 監査院, 1980. 11), pp. 27-28.

(18) 예를 들면 韓國石油開發公社法 第1條, 韓國土地開發公社法 第1條

있겠다.

3. 公企監査 擔當機構

가. 1977年 8月 以前

Hanson은 관일에 적당한 民間의 公認會計士事務所가 있으면 좋으나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監査院에 公企業監査擔當課를 두든지 公企業에 대한 商業式監査를 담당할 별도의 機關을 設置하여 이들로 하여금 公企業의 監査를 담당하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으나 1977년 8월까지의 우리나라 監査院의 公企業監査擔當機構는 Hanson의 이러한 主張과는 距離가 먼 것이었다.

公企業監査를 專擔하는 機構가 없었고 一般部處의 會計檢査를 擔當하는 課에서 公企業의 監査도 擔當했던 것이다. 當時의 監査院의 業務分掌에 관한 原則은 政府投資機關의 監査는 그 主務部處의 監査를 담당하는 課에서 同時에 담당한다는 것이었다.

이리하여 韓國産業銀行, 中小企業銀行, 國民銀行, 住宅銀行등의 監査는 財務部의 監査를 담당하는 第1局 第1課에서 담당했으며 韓國電力株式會社, 大韓石炭公社의 監査는 商工部의 監査를 담당하는 第2局 第4課에서 담당했다. 農漁村開發公社와 農業振興公社는 農水産部를 담당하는 第3局 第3課에서 監査했으며 國定教科書株式會社는 文敎部를 담당하는 第4局 第4課에서 담당했다.

多幸히도 政府部處의 形態를 지닌 公企業의 監査는 第5局에서 담당했는데 鐵道廳은 第2課에서 遞信部는 第3課에서 專賣廳은 第4課에서 담당했던 것이다.

나. 1977年 9月 以後

1977年 8月の 監査院의 職制改正에 따라 監査院 各局 各課의 擔當業務에 一大變動이 일어났다. 特히 政府投資機關의 監査는 第4局에서 專擔하게 된 것이다.

좀더 具體적으로 살펴본다면 韓國造幣公社, 韓國證券去來所와 같은 財務部傘下의 非金融機關과 勤勞福祉公社, 韓國海外開發公社, 韓國放送公社, 國定教科書株式會社와 같은 保社部·文公部·文敎部傘下의 政府投資機關에 대한 監査는 第4局 第1課에서 담당한다.

韓國電力株式會社, 大韓石炭公社, 大韓鑛業振興公社, 韓國石油開發公社, 大韓貿易振興公社, 浦項綜合製鐵株式會社, 韓國綜合化學工業株式會社와 같은 動資部와 商工部傘下의 政府投資機關에 대한 監査는 第4局 第2課에서 담당하며 大韓住宅公社, 韓國道路公社, 産業基地開發公社, 農漁村開發公社, 大韓浚渫公社, 國際觀光公社, 韓國土地開發公社와 같은 建設部, 農水産部, 交通部傘下의 政府投資機關에 대한 監査는 第4局 第3課 所管이다.

韓國産業銀行, 中小企業銀行, 國民銀行, 韓國住宅銀行, 韓國外換銀行, 韓國輸出入銀行 및 政府持分率이 50% 未滿인 銀行등은 第4局 第4課에서 監査를 擔當한다.

그리고 政府部處의 形態를 지닌 公企業인 專賣廳과 鐵道廳에 대한 監査는 第4局 第5課에서 담당하고 있다. 公企業에 대한 監査를 第4局에 集中시키고 있다는 點에서 높이 評價

되어야 한다고 생각되나, 하나 유감스러운 점은 같은 政府部處의 形態를 지닌 公企業이지만 遞信部에 대한 監査는 第4局에서 담당하지 않고 建設部, 交通部, 海運港灣廳과 함께 第1局 第3課에서 담당하고 있다는 事實이다.

四. 公企業에 대한 監査院監査의 運營

1. 公企業監査의 方法

가. 書面監査와 實地監査

公企業에 대한 監査는 첫째로 書面監査와 實地監査로 區分하여 考察할 수 있다. 政府投資機關豫算會計法 및 同施行令을 위시하여 其他 많은 法令에 의하여 公企業이 監査院에 많은 會計關係書類를 提出하게 되어 있는데 監査院의 主管局課에서는 이에 대하여 書面監査를 實施한다.

이밖에도 監査院은 公企業에 대하여 實地監査도 實施하는데 人力이나 豫算上의 理由로 每年 모든 政府投資機關에 대해서 實地監査를 實施할 수 있는 形便에 있지 못하다. 이리하여 最近에 나서는 主務部長官에게 代行檢査(委任檢査)를 많이 依頼하고 있다. 1978年の 경우를 본다면 25個 政府投資機關中 9個機關에 대해서만 實地監査를 實施하고 7個機關에 대해서는 主務部長官에 의한 代行檢査로서 代身하고 있다.⁽¹⁹⁾

1979年度에는 實地監査가 더욱 줄어 26個 政府投資機關中 4個機關에 대해서만 實地監査를 實施하고 7個機關에 대해서는 主務部에 의한 代行檢査를 實施했다.⁽²⁰⁾

나. 一般의 監査와 綜合的 監査

公企業에 대한 監査는 一般的 監査와 綜合的 監査로도 區分하여 생각할 수 있다. 一般的 監査는 個別的인 收入支出의 合法性을 強調하는 傳統的인 監査方法인데 대하여 綜合的 監査는 個別的인 去來에 置重하는 것이 아니라 各機關의 會計制度, 財務管理制度의 健全性과 事業運營의 能率性에 重點을 두는 監査方法이다.

우리나라 監査院은 1976年度까지는 公企業에 대하여 主로 一般的 監査를 實施했으나 1977年度부터는 一般的 監査와 併行하여 綜合監査도 實施하고 있는 듯하다. 1977年度부터 政府投資機關決算檢査報告에서 綜合監査라는 用語를 使用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企業의 全般的 能率을 強調하는 傾向이 나타나고 있다.

美國의 會計檢査院이 1950년부터 採擇하기 시작한 綜合監査를 우리나라에서도 導入해야 한다는 主張이 提起된지는 오래 되었으나 1970年代 後半에 와서야 이것이 實現을 보았다. 多少 때늦은 感은 있으나 監査院이 綜合監査로 移行하기 시작한 것은 國家發展을 위한 監査院의 支撐的 役割이라는 觀點에서 볼 때에도 多幸한 일이라고 하겠다.

(19) 監査院, 1978年度政府投資機關決算檢査報告(서울: 監査院, 1979), pp831-296.

(20) 監査院, 1979年度政府投資機關決算檢査報告(서울: 監査院, 1980), pp. 31-298.

2. 公企業監査의 時期와 頻度

公企業에 대한 監査院 監査의 頻度는 政府投資機關豫算會計法の 適用을 받는 政府投資機關과 政府持分率이 50%未滿인 政府出資機關이나 間接投資機關 間에 差異가 있으므로 兩者를 區分하여 考察할 必要가 있다.

가. 政府投資機關에 대한 監査

第31條에서 이미 言及한 바와 같이 監査院法에 의하여 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가 資本金의 2分の 1 以上을 出資한 法人의 會計는 必要的檢査事項으로 되어 있으며 政府投資機關豫算會計法은 監査院長은 政府投資機關의 決算書를 檢査하고 그 報告書를 다음 年度 8月 31日 까지 財務部長官에게 送付하여야 한다고 規定하고 있다.

(1) 全面監査

前述한 監査院法과 政府投資機關豫算會計法の 規定에 의하여 監査院은 政府投資機關에 대하여 每年 書面監査를 實施하여 그 結果를 政府投資機關 決算檢査報告書에 收錄하고 있다.

政府投資機關 決算檢査報告書는 第1章에서 檢査對象과 活動에 言及하고 第2章 決算의 檢査에서 事業損益, 財産狀態, 剩餘金處分을 다루고 있다. 이어서 第3章에서 運營上의 問題點과 違法不當事項으로 나누어 會計檢査結果를 總括하고 第4章에서는 機關別로 決算狀況과 會計檢査結果를 詳述하고 있다.

(2) 實地監査

政府投資機關에 대한 實地監査는 書面查監의 경우와 달라서 每年 모든 機關에 대해서 實施하지는 못하고 있다.

나. 政府出資機關 및 間接投資機關에 대한 監査

前述한 바와 같이 政府出資機關(50%未滿 出資法人)과 間接投資機關(再出資法人)의 會計는 選擇的 檢査事項이다. 監査院이 必要하다고 認定한 때 또는 國務總理의 要求가 있는 때에 檢査하도록 되어 있다.

監査院의 1980年度 業務計劃에 따르면 政府出資機關은 銀行 7個, 其他 18個로서 合計 25個機關이며, 間接投資機關은 證券會社 7個, 綜合金融 5個, 其他 53個로서 合計 65個機關에 達하고 있다.

必要的 檢査事項만 하도 事務量이 방대한 까닭에 選擇的 檢査事項은 그야말로 監査院이 必要하다고 認定하는 경우에만 監査를 實施하고 있다. 이리하여 韓國產業銀行의 出資企業體(子會社)인 韓國肥料株式會社의 경우 設立(1964年)以後 1973년에 이르는 期間中 監査院 監査를 한 번만 받았던 것이다.

이와 같이 考察할 때 政府出資機關과 間接投資機關에 대한 監査는 主務부와 企業體의 自體監査에 주로 依存할 수 밖에 없다는 結論에 到達한다.

3. 代行監査·主務부에 의한 監査 및 自體監査

前述한 바와 같이 監査院이 모든 政府投資機關에 대해서 每年 實地監査를 實施하기가 困難할 뿐만 아니라 政府持分率 50%未滿의 政府出資機關이나 間接投資機關(再出資法人)에 대한 監査는 더욱 어려운 實情에 있으므로 代行監査·主務部에 의한 監査나 自體監査에 依存할 수 밖에 없다.

가. 代行監査

監査院이 比較的 輕微한 事項에 關하여 直接 檢査를 行하지 아니하고 便宜上 그 權限에 속하는 檢査事務의 一部를 當該機關 또는 監督機關에 委任하여 檢査를 實施하게 되는 것을 말한다.

舊審計院去은 「委託檢査」에 關한 規定을 두고 있었으나 1963년의 監査院法은 이 規定을 削除했던 것이다.

그러나 監査院이 모든 對象機關에 대하여 會計檢査를 빠짐없이 實施한다는 것은 制限된 人員·豫算 및 時間 등으로 不可能하므로 「監査의 省略」에 關한 規定을 援用하여 代行監査를 實施하고 있는 것이다.

代行監査는 行政機關에 대한 監査뿐만 아니라 公企業에 대한 監査를 위해서도 活用되고 있다.

監査院이 公企業分野에 있어서 代行監査를 活用하기 시작한 것은 1977년의 일인데 이해에 財務部傘下의 5個機關에 대한 代行監査를 財務部長官에게 依賴했던 것이다. 1978年度에는 이를 더욱 擴大하여 7個部處傘下의 7個機關에 대한 代行監査를 依賴하였으며 1979年度에도 7個機關에 대하여 代行監査를 實施하였다.

나. 主務部에 의한 監査

政府投資機關豫算會計法이나 個別的인 公企業設置法에 의하여 主務部는 그 傘下에 있는 公企業에 대하여 監査를 實施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를 주로 擔當하는 機構가 各部處의 監査官室이다

次官直屬 또는 企劃管理室所屬으로 되어 있는 監査官室은 各部處의 自體監査를 擔當하나 商工部, 建設部 등과 같이 그 傘下에 公企業을 지니고 있는 部處의 監査官室은 公企業의 監査도 擔當하고 있다.

16 名의 定員을 지니고 있는 商工部の 監査官室의 경우를 본다면 監査對象機關으로서 商工部 本部 및 馬山, 裡里管理所 外에 3個의 政府投資機關과 128個의 傘下團體를 지니고 있는 까닭에 政府投資機關에 대한 監査에 人員과 時間을 크게 投入하기 어려운 實情에 있으므로 3년에 2回 정도 監査를 實施하고 있다. 그 傘下에 많은 子會社를 거느리고 있는 韓國 綜合化學工業株式會社에 대해서는 母會社인 綜合化學만 商工部 監査官室이 監査하고 子會社의 監査는 全적으로 綜合化學에 一任하고 있다.⁽²¹⁾

(21) 1981年 2月 17日 商工部 監査官室 實務者들과의 面接에서 入手한 資料

18名の定員을 지니고 있는 建設部 監査官室도 商工部の 경우와 같이 監査對象機關이 많은 까닭에 政府投資機關의 監査를 위해서 많은 人員과 時間을 投入하기 어려운 實情에 있다. 이리하여 1978年度에는 4個 政府投資機關 中 3個 機關에 대해서 監査를 實施했으며, 1979年度에는 2個 機關, 1980年度에는 3個 機關에 대해서 各各 監査를 實施했다.⁽²²⁾

商工部·建設部와 다소 體制가 다른 것이 財務部이다. 13名の定員을 지니고 있는 財務部 監査官室은 直接 그 傘下에 있는 政府投資機關을 監査하지 않고 中間監督機關인 銀行監督院, 保險公社 및 證券監督院만 監査하고 이들 3個 機關이 銀行, 保險會社, 證券會社등을 監査하고 있다.⁽²³⁾

다. 自體監査

監査院 監査와 主務부에 의한 監査가 外部統制인데 대하여 公企業의 自體監査는 內部統制이다. 外部統制은 內部統制보다 強力할 수 있고 客觀的일 수 있다는 長點이 있으나 機關을 全體的으로 把握할 수 있는 時間과 人員의 不足으로 皮相的일 수 밖에 없다는 缺陷이 있다. 特別 業務의 特殊性에 있어서 外部機關에 의한 業務把握이 어려운 公企業에 있어서 는 自體監査가 더욱 더 重要性을 지닐 수 밖에 없다고 하겠다.

(1) 自體監査機構

各 公企業의 設置法과 政府投資機關管理法에 의거하여 政府投資機關에는 主務部長官이 財務部長官과 協議하여 任命하는 任期 2年の 監事가 있으며 그 밑에 監事室이 있다.

1979年度 政府投資機關의 監査機構를 본다면 韓國銀行을 제외한 25個機關의 監査機構 人員이 497名으로서 機構當 平均 19.9名이다.

韓國電力과 같이 103名에 達하는 방대한 人員을 지니고 있는 監査機構가 있는가 하면 勤勞福祉公社나 石油開發公社와 같이 監査機構의 人員이 4名에 지나지 않는 機關도 있다.⁽²⁴⁾

比較的 構成員의 安定性이 낮으며 上位職의 比率이 높고 業務量이 過多한 편이다. 1979年末現在 監査職員 1人當 對象業務를 보면 平均 170名の 職員이 擔當하는 業務를 監査對象으로 하고 있다.⁽²⁵⁾

(2) 監査活動

政府投資機關의 自體監査가 다소 低調하다는 것이 監査院의 評價이다. 1977年度에는 1,845個 對象部署의 55.8%에 該當되는 1,030個 部署에 대해서 監査를 實施했으며 1978年度에는 1,998個 對象部署의 58.3%에 該當하는 1,163個 部署에 대해 監査를 實施했다. 1979年度에는 1977年度보다 低調하여 2,096個 對象部署의 55.7%에 該當되는 1,162個 部署에 대해서 監査를 實施했다.⁽²⁶⁾

(22) 1981年 2月 18日 建設部 監査官室 實務者와의 面接에서 入手한 資料

(23) 1981年 2月 17日 財務部 監査官室 實務者와의 面接에서 入手한 資料

(24) 監査院, 自體監査要員課程教材(서울: 監査院, 1980), p. 4.

(25) 『』揭書, p. 84.

(26) 『』揭書, p. 11.

(3) 監査結果의 處理

1977년부터 1979년에 이르는 期間中 自體監査實績을 處分要求別로 본다면 辨償이 年間平均 324件이며 問責이 372件, 是正이 11,017件, 注意가 3,054件, 改善이 594件 이다.⁽²⁷⁾

個別的인 處分要求가 3年間 어떻게 摘出件數에 있어서 變動되어 왔는가를 指摘하지는 않았으나 改善이 1977年度の 865件에서 1978年度에 407件으로 크게 減少되었다가 1979年度에는 509件으로 다소 늘어났다. 辨償, 問責, 是正도 重要하나 制度나 過程의 改革을 意味하는 改善이 보다 무거운 比重을 차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겠다.

라. 結 語

우리는 위에서 監査院이 政府投資機關에 대하여 每年 書面監査를 實施하나 人力이나 豫算關係로 實地監査를 漸次 縮少하고 代行監査(委任監査), 主務부에 의한 監査 및 政府投資機關의 自體監査에 보다 力點을 두기 시작했다는 것을 알았다.

1977년부터 政府投資機關에 대하여 適用하기 시작한 代行監査를 積極 活用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主務부에 의한 監査와 自體監査의 實效를 거두기 위하여 1980년에 各部處뿐만 아니라 政府投資機關의 監査要員에 대하여 廣範圍한 問題에 걸쳐 訓練까지 實施했다는 것은 매우 반가운 일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아직까지 유감스러운 것은 政府持分率이 50%에 未達하는 政府出資機關이나 政府投資機關의 社會인 間接投資機關에 대한 代行監査나 主務부에 의한 監査가 아직도 比較的 소홀하다는 點이다. 前述한 바와 같이 이들 機關에 대한 監査는 監査院法에 의하여 選擇的 檢査事項으로 되어 있어서 監査院이 直接 監査하는 경우가 빈번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代行監査를 거의 適用하지 않고 있으며 主務부에 의한 監査도 比較的 소홀한 것 같다. 1980年 12월에 實施한 投資機關 自體要員 教育時에 政府出資比率 50% 未滿의 機關까지 包含시킨 것은 多岐한 일이라 하겠다.

4. 監査結果의 處理

가. 決算檢査報告

公企業에 대한 監査가 끝나면 監査院은 政府投資機關決算檢査報告를 作成하여 이를 8月 31일까지 財務部長官에게 送付하며 財務部長官은 政府投資機關決算書에 政府投資機關決算檢査報告를 添附하여 國務會議에 報告한다.

1975年度까지는 政府投資機關決算檢査報告에 政府持分率이 50%에 未達하는 所謂 其他出資法人의 監査事項도 收錄했으나 1976年度부터는 이를 收錄하지 않고 있다.

前述한 바와 같이 選擇的 檢査事項으로 되어 있다고는 하나 其他出資法人과 間接投資機關에 대한 監査가 소홀히 되고 있는 感이 있으므로 1975年 以前과 같이 其他出資法人에 대한 監査事項도 政府投資機關決算檢査報告에 收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겠다.

(27) 上揭書, p.13.

〈表 2〉 政府投資機關違法不當事項에 대한 處分要求狀況

(1973~1979)

年 度	辨 償 判 定		問 責		是 正		注 意	改 善	總 計		
	件數	金 額	件數	人員	件數	金 額	件數	件數	件數	金 額	人員
1973	14	16,253,373	7	9	102	82,306,585	137	12	272	98,994,300	9
1974	71	122,151,151	42	81	353	782,862,573	385	23	876	916,776,557	84
1975	310	248,899,439	79	105	216	1,094,612,690	150	34	789	1,345,118,830	105
1976	1	136,007	5	10	54	272,321,911	25	—	85	272,457,918	10
1977	19	2,708,884	50	50	145	1,175,496,916	298	1	513	1,178,205,800	50
1978	12	6,402,475	18	18	68	396,618,026 △1,712,947	84	—	182	403,020,501 △1,712,947	18
1979	4	2,295,669	18	18	57	242,784,478 △3,281,215	143	1	223	245,080,147 △3,281,215	18

나. 違法不當事項에 대한 處分要求

監査院은 監査의 結果 違法不當事項이 있다고 認定할 때에는 辨償判定, 問責, 是正, 注意 및 改善 등의 處分要求를 할 수 있다.

1973年度부터 1979年度에 이르는 期間中 監査院이 政府投資機關에 대하여 내린 處分要求는 表 2와 같은데 그 特長으로서 다음과 같은 몇가지를 指摘할 수 있겠다.

첫째로 提出件數에 있어서 지나치게 起伏이 심하다는 것을 들 수 있다. 總提出件數를 보더라도 1973年度에 272件이었던 것이 1974年度에는 876件으로 急增하였으며 1975년에는 789件을 維持하다가 1976年度에는 85件으로 減少되었고 1977年度에는 다시 513件으로 急增했던 것이다.

둘째로 總提出件數에 있어서 各處分要求가 차지하는 比率에도 起伏이 심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總提出件數에 있어서 辨償判定이 차지하는 比率을 보더라도 1975年度에는 39.3%에 達했던 것이 1976年度에는 0.1%로 떨어졌다. 同一한 現象은 問責, 是正, 注意의 경우에서도 찾아 볼 수 있다.

셋째로 年度나 節次의 改革을 意味하는 改善이 最近에 와서 別로 活用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1975年度에만 하더라도 34件에 達하던 改善이 1976年度부터는 거의 活用되지 않고 있는 것이다.

5. 公企業監査와 費用便益分析

가. 費用便益分析의 意義

一定한 資源으로 最大의 便益을 얻거나 一定한 便益을 얻기 위하여 最少의 資源을 들이기 위한 解答을 찾아내려는 分析方法을 意味하는 費用便益分析은 最近에 와서 우리나라 政府部門에서도 導入되어 投資審査分析에서 많이 活用되고 있는데 앞으로 公企業監査에 있어서도 널리 活用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겠다.

나. 設立目的副應度 向上과 費用便益分析

특히 最近에 와서 監査院은 公企業監査의 目的의 하나로서 設立目的副應度 向上을 내걸고 不必要한 事業이나 成果없는 事業의 是正·抑制에 나서고 있는데 이러한 監査院의 努力이 實效를 거두기 위해서는 投資審査分野에서 이미 活用되고 있는 費用便益分析을 導入할 必要가 있다고 하겠다.

五. 結 論

우리는 위에서 韓國公企業의 現況을 살펴본 다음 第3項에서 公企業監査의 法的 根據를 檢討하고 公企業監査의 目的과 公企業監査 擔當機構를 考察하였다.

第4項에서는 公企業監査를 위하여 使用되는 方法이 무엇이며 公企業監査의 頻도가 어느 程度인지를 考察한 다음 公企業監査를 위해서 代行監査(委任監査)는 어떻게 活用되고 있으며 主務部에 의한 監査와 公企業의 自體監査의 實態는 어떠한가를 살펴 보았다. 이어서 公企業에 대한 監査가 끝난 다음 監査結果는 어떻게 處理되고 있는가를 考察한 다음 公企業監査에 있어서 費用便益分析이 어떻게 活用될 수 있는가를 檢討해 보았다. 以上과 같은 考察에서 몇가지 두드러지게 나타난 점을 要約한다면 다음과 같다.

1. 公企業監査의 目的으로서 經營의 合理化, 經營陣의 責任經營制 確立과 함께 設立目的 副應性 向上을 내세우고 있는 것은 매우 重要한 일이라 하겠다. 많은 公企業이 그 設置法에서 國家發展에의 寄與를 設立目的으로 들고 있으므로 設立目的副應度 向上은 窮局的으로 國家發展에의 寄與度 向上을 意味한다고 하겠다.

2. 1977年 8月까지는 公企業監査를 專擔하는 機構가 없었으나 1977年 9月 부터 第4局이 公企業監査를 專擔하게 되었다는 것은 專門性的의 增大라는 觀點에서 볼 때에도 進一步한 것 이라고 할 수 있다.

3. 最近에 와서 個別的인 收入支出의 合法性을 강조하는 一般的監査 爲主에서 綜合的 監査를 併行하는 方向으로 移行하고 있다는 것은 때 늦은 感은 있으나 多幸한 일이라 하겠다.

4. 監査院이 여러가지 事情으로 모든 政府投資機關에 대해서 每年 實地監査를 實施하기가 어려우므로 主務部에 代行監査(委任監査)를 많이 依賴하고 있다. 代行監査는 앞으로 더욱 擴大되어야 하며 政府持分率 50%未滿의 出資機關이나 間接投資機關에 適用해 보는 것도 必要할 것 같다.

5. 最近에 와서 主務部에 의한 公企業監査와 公企業의 自體監査를 活用化하기 위한 試圖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監査要員에 대해서 監査院에서 訓練도 實施하고 있는데 이러한 努力은 더욱 強化되어야 한다.

6. 監査結果의 處理를 보면 摘出件數나 總摘出件數에 있어서 各處分要求가 차지하는 比率가 지나치게 起伏이 심하다는 것을 指摘할 수 있으며 制度나 節次의 改革을 意味하는「改

善」이 좀더 活用되었으면 하는 생각이 든다.

7. 公企業監査에 있어서 最近 우리나라의 投資審査分析에서 活用되기 시작한 費用便益分析을 導入할 必要가 있다고 생각한다.